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2026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환 (치매, 파킨슨, 노인성 뇌혈관질환 대상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 으로 재가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 ②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수급자로 정한다
 1. 장기요양인정 1~4등급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단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의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

2. 이용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용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 ②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그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2026년 월 이용료 및 부담

○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6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2.88%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종료자(하위계층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또는 6 %

- ①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월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③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100%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에서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방문요양 시간별 이용료 및 본인부담

방문당 시간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15%기준)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 이상	16,940	2,541	17,450	2,618
60분 이상	24,580	3,687	25,320	3,798
90분 이상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이상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이상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이상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이상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이상	68,030	10,205	70,080	10,512

*심야가산 : 22시 이후 ~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한다. (인지활동형 제외)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한다.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단, 위 가산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중에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내용 변경에 따라 급여비용이 변경 된다.

- 변경방법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첨부하여 변경한다.

5.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기관(요양요원)과 신원인수인(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할 통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비용부담의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지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7.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월 이용료는 에서 정한 수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④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록된 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서비스구분	서비스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간단한 목욕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의 가사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치매관리지원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업무기록 및 보고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8. 이용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⑤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 ⑥ 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 ⑦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9. 기관 현황

기 관 명 :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번호 : 070-7390-9532

팩스번호 : 070-7391-9532

급여종류 : 방문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시설현황 : 면적 : 30.06㎡

소유형태 : 임대, 사무실, 화장실

주 소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33,
대창센시티 상가동 203호

E-mail : lyk253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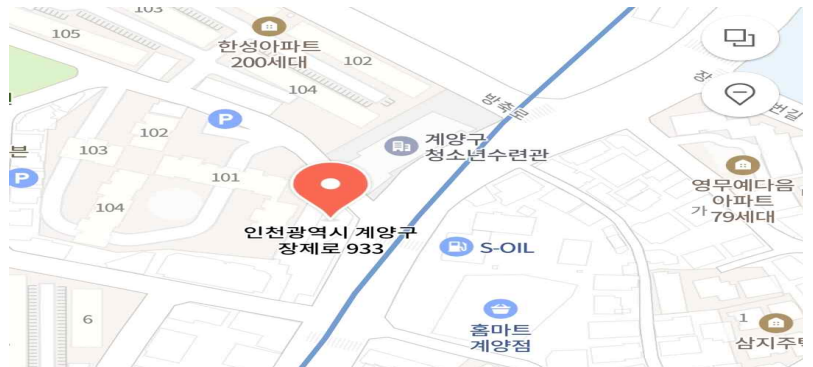
홈페이지 : <https://hallomoon.tistory.com>

교 통 편 : 박촌역 2번출구에서 임학역 방향으로 도보로 400m (청소년수련관 옆 건물)

주차시설 : 방죽공영주차장(방죽동 113), 청소년수련관 옆 도로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낮시간 이용)

인력현황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28명 (2026.01.01. 기준)

책임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2025.10.01.~2026.10.01.) 가입



보험가입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가입업체명 :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인천)
보험종목 :	기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F-2025-0336801 [122-80-31386]
보험기간 :	2025.10.01.00:00 부터 2026.10.01.00:00 까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3, 상가동 203호 (방죽동, 계양산대창센시티아파트)